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경비업무의 종류에 혼잡·교통유도경비업무를 추가하는 「경비업법」이 개정(법률 제20152호, 2024. 1. 30. 공포, 1. 31. 시행)됨에 따라 경비지도사와 경비원이 이수하는 교육과정에 혼잡·교통유도경비업무와 관련된 내용을 추가하는 한편,

경비지도사의 자질 향상 및 전문성 강화를 위한 보수교육제도를 신설하는 내용으로 「경비업법」이 개정(법률 제20266호, 2024. 2. 13. 공포, 8. 14. 시행)됨에 따라 보수교육의 과목 및 시간 등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려는 것임

2. 주요 토의과제

없 음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 기관 없음

라. 기 타 :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경비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경비업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의 제목 “(경비지도사에 대한 교육)”을 “(경비지도사에 대한 기본 교육)”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에”를 “제1항에 따른 기본교육에”로, “교육을”을 “기본교육을”로 한다.

- ① 영 제15조의2제2항에 따른 기본교육의 과목 및 시간은 별표 1에 따른다.

제12조의 제목 “(일반경비원에 대한 신입교육의 실시 등)”을 “(경비원에 대한 신입교육의 실시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같다”를 “같고, 특수경비원 신입교육의 과목 및 시간은 별표 4와 같다”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일반경비원에”를 “경비원에”로, “영 제18조제1항에 따른 일반경비원 신입교육 기관 또는 단체가”를 “법제13조의2제1항에 따른 경비원 교육기관이”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영 제18조제1항에 따른 일반경비원 신입교육 기관 또는 단체”를 “경비원 교육기관”으로, “일반경비원 신입교육과정”을 “신입교육과정”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및 제6항 중 “일반경비원”을 각각 “경비원”으로 한다.

제12조의2부터 제12조의4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2조의2(보수교육의 과목 및 시간) ① 영 제15조의3제2항에 따른 보수교육의 과목 및 시간은 별표 4의2와 같다.

② 보수교육 교육기관의 장은 보수교육을 이수한 사람에게 별지 제8호의2서식의 경비지도사 보수교육 이수증을 발급해야 한다.

제12조의3(경비지도사 교육기관의 지정 취소 등) ① 법 제11조의4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경비지도사 교육기관의 지정 취소 및 업무 정지 기준은 별표 6에 따른다.

② 경찰청장은 제1항에 따라 경비지도사 교육기관 지정을 취소하거나 업무 정지를 명한 경우 그 사실을 경찰청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12조의4(경비지도사의 선임·해임 신고) ① 법 제12조의2에 따라 경비업자는 경비지도사를 선임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별지 제10호의3서식의 경비지도사 선임 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주사무소 소재지나 경비원 배치 장소(이하 “배치지”라 한다)를 관할하는 시·도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경비업자는 법 제2조제1항제5호에 따른 집단민원현장에 경비원 배치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경비원을 배치하기 48시간 전까지 별지 제10호의2서식의 경비지도사 선임신고서를 배치지 관할 경찰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경비지도사의 선임 신고를 한 경비업자가 경비지도사를 해임한 때에는 해임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별지 제10호

의3서식의 경비지도사 해임신고서를 주사무소 소재지나 배치지를 관할하는 시·도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경비지도사 선임신고서에 기재한 해임 예정일에 경비지도사를 해임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④ 시·도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은 경비지도사로 선임되어 업무에 종사하였던 사람이 요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0호의4서식의 경비지도사 선임 확인증을 발급할 수 있다.

제13조의 제목 “(일반경비원에 대한 직무교육의 시간 등)”을 “(경비원에 대한 직무교육의 시간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2시간”을 “일반경비원은 2시간, 특수경비원은 3시간”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영 제18조제3항”을 “영 제18조제5항”으로, “일반경비원에”를 “경비원에”로, “일반경비원의”를 “경비원의”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관할 경찰서장 및 공항경찰대장 등 국가중요시설의 경비책임자(이하 “관할경찰관서장”이라 한다)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특수경비원이 배치된 경비대상시설에 소속 공무원을 파견하여 직무집행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④ 영 제18조제3항에 따른 직무교육은 대면교육 또는 경찰청장이 정한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온라인교육으로 한다.

제1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3조의2(경비원 교육기관의 지정 취소 등) 법 제13조의3제1항 및 제2

항에 따른 경비원 교육기관의 지정 취소 및 업무 정지에 대해서는 제12조의3을 준용한다

제14조부터 제16조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2의 실무교육(19시간)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실무교육 (19시간)	시설경비 실무	3
	호송경비 실무	2
	신변보호 실무	2
	기계경비 실무	2
	혼잡·교통유도경비 실무	2
	사고 예방대책	2
	체포·호신술	2
	장비 사용법	2
	직업윤리 및 인권보호	2

별표 3을 삭제한다.

별표4의 실무교육(61시간)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실무교육 (61시간)	테러 및 재난 대응요령	4
	폭발물 처리요령	6
	화재대처법	3
	응급처치법	3
	장비 사용법	3
	출입통제 요령	3
	직업윤리 및 서비스	2
	기계경비 실무	3

	혼잡·교통유도경비 업무	4
	정보보호 및 보안 업무	6
	시설경비 요령	4
	민방공	4
	충기조작	3
	사격	6
	체포·호신술	4
	관찰·기록기법	3

별표 4의2 및 별표 6을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8호의2서식, 별지 제10호의3서식 및 별지 제10호의4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이 규칙은 2024년 8월 16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 별표 2, 별표 4의 개정규정은 2025년 1월 31일부터 시행한다.

■ 경비업법 시행규칙 [별표 1]

경비지도사 기본교육의 과목 및 시간(제9조제1항 관련)

구분 (교육시간)	과목		시간
공통교육 (22시간)	「경비업법」, 「경찰관직무집행법」, 「도로교통법」 등 관계 법령 및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 보호 지침 등		4
	실무 I		4
	실무 II		3
	범죄·테러·재난 대응요령 및 화재 대처법		2
	응급처치법		2
	직업윤리 및 인권보호		2
	체포·호신술		2
	입교식, 평가 및 수료식		3
자격의 종류별 교육 (18시간)	일반경비 지도사	시설경비	3
		호송경비	2
		신변보호	2
		특수경비	2
		혼잡·다중운집 인파 관리	2
		교통안전 관리	2
		일반경비 현장실습	5
	기계경비 지도사	기계경비 운용관리	4
		기계경비 기획 및 설계	4
		인력경비 개론	5
		기계경비 현장실습	5
계			40

비고: 일반경비지도사 자격증 취득자 또는 기계경비지도사 자격증 취득자가 자격증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기계경비지도사 또는 일반경비지도사 시험에 합격하여 교육을 받은 경우 공통교육은 면제한다.

[별표 4의2]

경비지도사 보수교육의 과목 및 시간(제12조의2제1항 관련)

구분	과목		시간
공통교육	경비업 법령		1
	직업윤리 및 인권보호		1
자격의 종류별 교육	일반경비지도사	일반경비 실무	4
	기계경비지도사	기계경비 실무	

※ 비고 : 일반경비지도사와 기계경비지도사 자격을 모두 취득한 사람이 일반 경비업무와 기계경비업무에 모두 선임된 경우 공통교육은 1회만 실시한다.

[별표 6]

교육기관의 지정 취소·업무 정지 기준(제12조의3제1항 및 제13조의2제1항 관련)

위반행위	처분기준		
	1차	2차	3차 이상
지정받은 사항을 위반하여 업무를 행한 경우	정지 1월	정지 3월	정지 6월
시정명령을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시정하지 아니한 경우	정지 3월	정지 6월	지정 취소
지정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정지 1월	정지 3월	지정 취소

1.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 기준은 최근 2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준 적용일은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일과 그 처분 후에 한 위반행위가 다시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2. 제1호에 따라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부과처분 차수(제1호에 따른 기간 내에 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경비지도사 보수교육 이수증

제 호

경비지도사 보수교육 이수증

성명 :

생년월일 :

주소 :

일반경비지도사 자격번호 :

기계경비지도사 자격번호 :

위의 사람은 년 월 일부터 월 일까지 실시한 (일반, 기계)
경비지도사 보수교육을 이수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교육원장 [인]

210mm×297mm
(보존용지(1종) 70g/m²)

경비지도사 선임·해임 신고서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를 합니다.

경비지도사		[] 선임 [] 해임		신고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즉시
신고인	법인 명칭		대표자 성명		허가번호
	소재지				전화번호
	선임장소(구체적으로 기재)				전화번호
선임(해임) 내용	선임일시		해임(예정)일시		
	경비지도사 성명 :		생년월일 :		
	전화번호 :		계약기간 :		
경비 지도사 명단	연번	성명	주민등록번호	경비지도사 자격번호	보수교육 이수증 교부번호
「경비업법」 제12조의2,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의4에 따라 경비지도사 선임[]·해임[]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시·도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			귀하		
첨부서류	경비지도사 자격증 사본 1부				수수료 없음
작성요령					
1. 경비지도사 보수교육 이수증 교부번호는 보수교육을 받은 경비지도사만 적습니다.					
2. 선임·해임 경비지도사 명단 작성 시 필요하면 별지를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제 호

경비지도사 선임 확인증

성명		생년월일	
자격번호		전화번호	

1. 경비지도사 선임 확인

위의 사람은 아래와 같이 경비업체에 선임되었음을 확인합니다.

경비업체	선임일	해임일

※작성 시 필요하면 별지를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2. 선임 확인

위의 사람에 대하여 경비업체 최종 선임일이 아래와 같음을 확인합니다.

○ 최종 선임일: 년 월 일

3. 현재 선임여부

위 사람의 현재 경비업체 선임 여부가 아래와 같음을 확인합니다.

○ 현재 선임여부: [] 선임 중(년 월 일부터)
[] 미선임

년 월 일

시·도경찰청장(경찰서장)

직 인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9조(경비지도사에 대한 교육) ① 법 제11조제1항에서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교육”이라 함은 경비지도사에 대한 별표 1의 규정에 의한 과목 및 시간의 교육을 말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에 소요되는 비용은 경비지도사의 교육을 받는 자의 부담으로 한다.	제9조(경비지도사에 대한 기본교육) ① 영 제15조의2제2항에 따른 기본교육의 과목 및 시간은 별표 1에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른 기본교육에 ----- 기본교육을 ----- --.
제12조(일반경비원에 대한 신입교육의 실시 등) ① 영 제18조제1항에 따른 일반경비원 신입교육의 과목 및 시간은 별표 2와 같다. ② 경찰청장은 일반경비원에 대한 신입교육의 실시를 위하여 연도별 교육계획을 수립하고, 영 제18조제1항에 따른 일반경비원 신입교육 기관 또는 단체가 교육계획에 따라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삭제 ④ 영 제18조제1항에 따른 일반경비원 신입교육 기관 또는 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일반경	제12조(경비원에 대한 신입교육의 실시 등) ① ----- ----- ----- 같고, 특수경비원 신입교육의 과목 및 시간은 별표 4와 같다. ② ----- 경비원에 ----- ----- ----- 법제13조의2제1항에 따른 경비원 교육기관이 ----- ----- -----. ③ 현행과 동일 ④ 경비원 교육기관----- ----- ----- 신입교

비원 신임교육과정을 마친 사람에게 별지 제11호서식의 신임교육이수증을 교부하고 그 사실을 별지 제12호서식의 신임교육이수증 교부대장에 기록해야 하며, 교육기관, 교육일, 교육이수증 교부번호 등을 포함한 신임교육 이수자 현황을 경찰청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⑤ 경비업자는 일반경비원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임교육을 받은 때에는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경비원의 명부에 그 사실을 기재하여야 한다.

⑥ 시·도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은 제1항에 따른 일반경비원 신임교육을 받은 사람이 요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2호의2서식의 신임교육 이수 확인증을 발급할 수 있다.

<신 설>

육과정-----

-----.

⑤ ----- 경비원-----

-----.

⑥ ----- 경비원 ---

-----.

제12조의2(보수교육의 과목 및 시간) ① 영 제15조의3제2항에 따른 보수교육의 과목 및 시간은 별표 4의2와 같다.
② 보수교육 교육기관의 장은 보수교육을 이수한 사람에게 별지 제8호의2서식의 경비지도사 보수교육 이수증을 발급해야 한다.

<신 설>

<신 설>

제12조의3(경비지도사 교육기관
의 지정 취소 등) ① 법 제11조
의4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교육
기관의 지정 취소 및 업무 정지
기준은 별표 6에 따른다.

② 경찰청장은 제1항에 따라 경
비지도사 교육기관 지정을 취소
하거나 업무 정지를 명한 경우
그 사실을 경찰청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12조의4(경비지도사의 선임·해
임 신고) ① 법 제12조의2에 따
라 경비업자는 경비지도사를 선
임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별지
제10호의3서식의 경비지도사
선임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
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주
사무소 소재지나 경비원 배치
장소(이하 “배치지”라 한다)를
관할하는 시·도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경비업
자는 법 제2조제1항제5호에 따
른 집단민원현장에 경비원 배치
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경비원을
배치하기 48시간 전까지 별지
제10호의2서식의 경비지도사
선임신고서를 배치지 관할 경찰
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13조(일반경비원에 대한 직무교육의 시간 등) ① 영 제18조제3항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시간”이란 2시간을 말한다.

② 영 제18조제3항에 따른 일반경비원에 대한 직무교육의 과목은 일반경비원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이론·실무과목 및 직업윤리 등으로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경비지도사의 선임 신고를 한 경비업자가 경비지도사를 해임한 때에는 해임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별지 제10호의3서식의 경비지도사 해임신고서를 주사무소 소재지나 배치지를 관할하는 시·도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경비지도사 선임신고시에 기재한 해임예정일에 경비지도사를 해임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④ 시·도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은 경비지도사로 선임되어 업무에 종사하였던 사람이 요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0호의4서식의 경비지도사 선임 확인증을 발급할 수 있다.

제13조(경비원에 대한 직무교육의 시간 등) ① -----

----- 일반경비원은 2시간, 특수경비원은 3시간-----
--.

② 영 제18조제5항----- 경비원에 -----
-- 경비원의 -----
-----.

<신 설>

<신 설>

<신 설>

제14조(특수경비원 신임교육 기관 또는 단체의 지정 등) ①영 제19조제1항에 의한 특수경비원 신임교육의 과정을 개설하고자 하는 기관 또는 단체는 별표 3의 규정에 의한 시설 등을 갖추고 경찰청장에게 지정을 요청하여야 한다.
②경찰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과정을 개설하고자 하는 기관 또는 단체가 동항의 규

③ 관할 경찰서장 및 공항경찰대장 등 국가중요시설의 경비책임자(이하 “관할경찰관서장”이라 한다)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특수경비원이 배치된 경비대상시설에 소속 공무원을 파견하여 직무집행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④ 영 제18조제3항에 따른 직무교육은 대면교육 또는 경찰청장이 정한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온라인교육으로 한다.

제13조의2(경비원 교육기관의 지정 취소 등) 법 제13조의3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경비원 교육기관의 지정 취소 및 업무 정지에 대해서는 제12조의3을 준용한다.

<삭 제>

정에 의한 지정을 요청한 때에는 별표 3의 규정에 의한 기준에 적합한 지의 여부를 확인한 후 그 기준에 적합한 경우 이를 특수경비원 신임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기관 또는 단체로 지정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을 받은 기관 또는 단체는 신임교육의 과정에서 필요한 경우에는 관할 경찰관서장에게 경찰관서 시설물의 이용이나 전문적인 소양을 갖춘 경찰관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제15조(특수경비원에 대한 신임교육의 실시 등) ①영 제19조제1항에 따른 특수경비원 신임교육의 과목 및 시간은 별표 4와 같다.

② 영 제19조제1항에 따른 특수경비원 신임교육 기관 또는 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특수경비원 신임교육과정을 마친 사람에게 별지 제11호서식의 신임교육이수증을 교부하고 그 사실을 별지 제12호서식의 신임교육이수증 교부대장에 기록해야 하며, 교육기관, 교육일, 교육이수증 교부번호 등을 포함한 신임

<삭 제>

교육 이수자 현황을 경찰청장에
게 통보해야 한다.

③경비업자는 특수경비원이 제
1항의 규정에 의한 신입교육을
받은 때에는 제23조제1항의 규
정에 의한 경비원의 명부에 그
사실을 기재하여야 한다.

④ 시·도경찰청장 또는 경찰서
장은 제1항에 따른 특수경비원
신입교육을 받은 사람이 요청하
는 경우에는 별지 제12호의2서
식의 신입교육 이수 확인증을
발급할 수 있다.

제16조(특수경비원에 대한 직무교
육의 시간 등) ①영 제19조제3
항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
하는 시간”이란 3시간을 말한
다.

②관할경찰서장 및 공항경찰대
장 등 국가중요시설의 경비책임
자(이하 “관할경찰관서장”이라
한다)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특수경비원이 배치된
경비대상시설에 소속공무원을
파견하여 직무집행에 필요한 교
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③ 영 제19조제3항에 따른 특수
경비원에 대한 직무교육의 과목
은 특수경비원의 직무수행에 필

<삭 제>

<u>요한 이론 · 실무과목 및 직업윤리 등으로 한다.</u>	
------------------------------------	--

〈 의안 소관 부서명 〉

경찰청 경찰청	
연 락 처	(02) 3150 - 0950